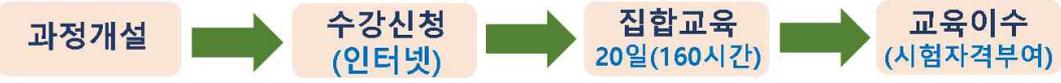


# 『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』 강습(자격취득) 교육 안내

(Ver 22.5)



구 분	주 요 내 용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: 화재예방법)」</li> </ul>
시행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화재예방법」 제34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</li> <li>○ 「화재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5조(강습교육의 실시) 내지 28조(강습교육의 과목, 시간 및 운영방법 등)</li> <li>○ 「화재예방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4조(강습교육의 과목·시간·운영 방법 및 교육비 납부에 관한 특례)</li> </ul>
교육 대상	<p><b>신청자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 각 호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감독적 직위에 있는 경우 (단,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대상인 공공기관 제외)</li> <li>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</li> <li>2. 국공립학교</li> <li>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li> <li>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</li> <li>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</li> <li>※ 근거 :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</li> </ul>
	<p><b>결격사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1. 만 15세 미만인 사람</li> <li>2. 정신질환자, 시각 및 청각장애인(단,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)</li> <li>3. 팔,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</li> <li>4. 기타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</li> <li>5. 교육수료 취소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6.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7.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</li> <li>※ 근거 : 안전원 「교육업무규정」 제21조제1항 및 제2항</li> </ul>

<b>교육 안내</b>	<b>과정명</b>	○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										
	<b>교육일정</b>	○ 안전원사이트 강습일정 참고(소방안전교육 → 강습교육 신청 → 교육일정)										
	<b>교육과정</b>	<p>○ 집합과정, <b>1일 8시간 교육(09:00 ~ 18:00, 점심시간 제외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>교육과정</th> <th>교육형태</th> <th>교육일수/시간</th> <th>교육장소</th> <th>수수료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집합과정</td> <td>집합교육</td> <td>집합 5일(40시간)</td> <td>안전원 교육장</td> <td>24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계산서는 현금(무통장입금 포함)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. (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)</p>	교육과정	교육형태	교육일수/시간	교육장소	수수료(원)	집합과정	집합교육	집합 5일(40시간)	안전원 교육장	240,000원
	교육과정	교육형태	교육일수/시간	교육장소	수수료(원)							
	집합과정	집합교육	집합 5일(40시간)	안전원 교육장	240,000원							
	<b>학습흐름</b>											
<b>수료기준</b>	<p>○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강습교육 수강시간이 결강시간 미만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4시간 초과 결강 시 미수료(다만,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)</li> <li>※ 결강기준 : 25분 이상 지각시 1교시 결강(매교시 적용)</li> </ul> </li> <li>실무능력평가를 모두 합격한 사람</li> </ol> <p>○ 수료시 「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」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</p>											
<b>일정변경</b>	○ 해당 집합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(단, 해당 연도 강습일정에 한하여 일정변경 가능)											
<b>교육장소</b>	○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											

교육 접수	접수방법	○ 인터넷 접수(선착순 마감)												
	제출서류	○ 사진(3.5*4.5cm) 1매, 신분증(교육당일 지참), 재직증명서(교육당일 반드시 제출)												
	환불규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환불기준</th> <th>환불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</td> <td>전 액</td> </tr> <tr> <td>과오납한 경우</td> <td>과오납 금액</td> </tr> <tr> <td>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할 경우 (실무능력평가 불합격자를 포함한다)</td> <td>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 할 경우</td> <td>교육수수료의 20% 공제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(과오납한 경우는 제외한다)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환불기준	환불금액	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	전 액	과오납한 경우	과오납 금액	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할 경우 (실무능력평가 불합격자를 포함한다)	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	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 할 경우	교육수수료의 20% 공제한 금액	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(과오납한 경우는 제외한다)	없음
환불기준	환불금액													
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	전 액													
과오납한 경우	과오납 금액													
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할 경우 (실무능력평가 불합격자를 포함한다)	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
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 할 경우	교육수수료의 20%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
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(과오납한 경우는 제외한다)	없음													
자격취득 후 선임대상	○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													
수료 후 타 자격 취득시 혜택	○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수료 시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이 면제됨 (시험응시 후 합격 시 해당 자격부여)													

교육비  
결제방법 안내

» 신용카드 결제



주의사항

- 1.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,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없으며,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.

» 무통장 입금



주의사항

- 1. 강습교육 신청 후 익일(근무일 기준)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습교육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.
- 2. 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(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)이 불가능합니다.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.
- 3.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, 폰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- 4.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- 5.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[확인방법 : <http://www.kfsi.or.kr> 접속 (교육정보 > 강습정보 > 강습신청내역 메뉴)]
- 6. 신용(체크)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~3주 정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- 지부별 연락처

지부별 연락처

지부(지역)	연락처	지부(지역)	연락처
서울지부(서울 영등포)	02) 850-1378	경기지부(수원 팔달구)	031) 257-0131
서울동부지부(서울 동대문구)	02) 850-1392	경기북부지부(파주)	031) 945-3118
부산지부(부산 금정구)	051) 553-8423	강원지부(횡성군)	033) 345-2119
대구경북지부(대구 중구)	053) 431-2393	충북지부(청주 서원구)	043) 237-3119
인천지부(인천 서구)	032) 569-1971	전북지부(전주 완주군)	063) 212-8315
광주전남지부(광주 광산구)	062) 942-6679	경남지부(창원 성산구)	055) 237-2071
대전충남지부(대전 대덕구)	042) 638-4119	제주지부(제주시)	064) 758-8047
울산지부(울산 남구)	052) 256-9011	-	-

※ 별첨 1

## 『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』 강습과목 및 시간

강습과목		시간
이론	소방안전관리자 제도	1
	소방관계법령(공공기관 소방안전 규정의 이해 포함)	4
	직업윤리 및 리더십	1
	건축관계법령	1
	소방계획의 수립(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),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	1
	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	1
	소방학개론	2
	응급처치	1
	<b>소 계1</b>	<b>12</b>
실무	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·관리	1
	위험물·전기·가스 안전관리	1
	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감독,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	1
	소방시설의 구조·점검(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포함)	8
	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	1
	<b>소 계2</b>	<b>12</b>

<b>실 습 및 평 가</b>	소방계획의 수립(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) 및 업무수행기록의 작성·유지 실습·평가	1
	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실습·평가	1
	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실습·평가	1
	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·평가	2
	소화기 실습·평가	2
	옥내소화전 실습·평가	2
	경보설비설비 실습·평가	3
	소방시설등(방화셔터, 방화문) 실습	
	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·평가	1
	응급처치 실습·평가	1
	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	1
	형성평가(수료)	1
	<b>소 계3</b>	<b>16</b>
<b>총 계</b>	<b>40</b>	

※ 별첨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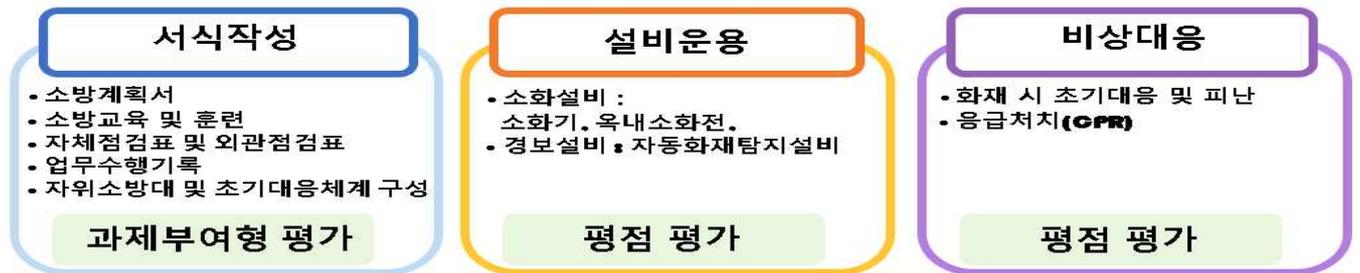
#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평가 시행 안내

## 1. 실무능력평가 개요

- 정 의 : 안전관리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
- 추진배경 : “무엇을 알고 있나” 보다는 “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” 로 초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의 현장적용성 확보
- 교육과정 :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전 과정

## 2. 실무능력평가 주요내용

### ○ 평가개요



- 평가절차 : 시범(강사시범) ⇨ 실습(개별/조별) ⇨ 평가(개인평가) ⇨ 재평가(불합격자)

## 3. 과정별 평가항목

구 분		특급	1급	2급	공공기관	3급
설비 운영	소 화 기	○	○	○	○	○
	자동화재탐지설비	○	○	○	○	○
	옥 내 소 화 전 *	○	○	○	○	○
	스 프 링 클 러	○	○	○	-	-
	가 스 계 소 화 설 비	○	○	-	-	-
	제 연 설 비	○	○	-	-	-
	완 강 기	○	○	-	-	-
서 식 작 성		소방계획서, 소방교육 및 훈련, 작동기능점검표, 업무수행기록,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				
비 상 대 응		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, 응급처치(CPR)				

※ 옥내소화전 : “펌프성능시험 포함” (특·1급)

## 4.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

구 분	평점평가	과제부여형 평가
적용과목	설비운영 전 과목, 응급처치	서식작성 전 과목, 화재대응 및 피난
평가방법	설비운영 및 점검능력 평가	서식작성 또는 실습 평가
합격기준	매 과목 12점 이상(20점 만점)	Pass / Non-pass